

# 01

## 2011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 안내

### ■ 수험원서 접수

가. 수험원서 접수방법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- 원서접수홈페이지 : [www.Q-net.or.kr](http://www.Q-net.or.kr)

나. 수험원서 접수시간

- 원서접수 첫날 09:00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:00까지

다. 수험원서 접수기간

- 필기시험 대상자 :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
- 실기(면접)시험 대상자 : 해당종목의 실기(면접)시험 원서접수기간
- 기타 대상자
  - 필기시험 면제자 : 해당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
  - 실기시험 면제자 :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
  - 필 · 실기시험 면제자 : 원하는 일자에 접수가능

■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의 “회별 검정시행일정” 및 “종목별 시행회”를 정확히 확인하여 시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■ 필기(필답)시험 시험시간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등급	부	시험시간	비고
기술사	-	09:00 ~ 17:20	※ 입실시간 기준(시험시작 30분전) ※ 기사, 산업기사(전문사무) 등급은 종목별 시험시간이 상이함
기능장	2부	11:30 ~ 12:30	
기사	1부	09:30 ~ 제한시간	
산업기사(전문사무)	2부	13:30 ~ 제한시간	
기능사	1부	09:30 ~ 10:30	
	2부	11:30 ~ 12:30	
	3부	14:00 ~ 15:00	

■ 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, 전문사무(일부종목)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당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첫날부터 8일 이내(토 · 공휴일 제외)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(졸업증명서, 공단 경력증명서,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, 자체 경력증명서 등)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일이 무효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※ 단,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당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첫날부터 4일내 제출

-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, 자체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, 소속,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에 한함
- 외국서류 구비 사유로 기간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지정된 기간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을 최종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 할 수 있음
- 제출된 응시자격서류는 D/B로 구축하여 보관 · 관리하므로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이전에도 제출할 수 있음 (단, 경력서류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가지를 첨부해야만 함)



-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 임
  - 실기(면접)시험 원서접수는 4일간이며 첫날 09:00부터 마지막날 18:00까지 임
  - 실기(면접)시험 접수마감일 이후 응시자격서류제출자는 응시자격서류심사만 가능하고 실기시험 접수는 불가함
  - 응시자격서류심사 종료 후 서류심사 불합격자(자격미달, 미제출자)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공고하니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
- 작업형 실기시험은 시험장 입차기관의 시설, 장비 및 일정, 수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므로 평일에도 시행하고 있으며, 일부 종목은 부득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응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 - 수험자 지참물 미지참시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
- 주관식 필기로 시행하는 실기시험은 시험이 시작되는 첫번째 일요일에 전국 동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- 자격증은공단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'11년부터 연예인 사진, 캐릭터 사진 등 본인사진이 아니면서 신분증을 미지참할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하며, 퇴실 조치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안내사항
    - 가. 필기시험 합격(예정)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:00임
    - 나. 접수된 응시자격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
    - 다. 수수료 환불은 [www.Q-net.or.kr](http://www.Q-net.or.kr)을 참고하기 바람
    - 라.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(휴대용 전화기,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(PDA),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(PMP), 휴대용 컴퓨터, 휴대용 카세트, 디지털 카메라, 음성파일 변환기(MP3), 휴대용 게임기, 전자사전, 카메라펜,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할 수 없음
    - 마.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,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으로 함
    - 바.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함
    - 사.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이니, 원서접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
    - 아. 천재지변,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
    - 자. 시험장에는 차량출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
    - 차.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방지를 위해 금지물품 휴대의혹 수험자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검색하니,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람
    - 카. '11년부터 상시검정 실기시험에 한하여 단체접수기관도 시험장 선택과 결재단계는 1명씩 처리가 가능하니 원서접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
    - 타. 기타 의문사항은 HRD고객센터(☎1644-8000) 또는 우리공단 지역본부,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람
- 자격검정 정보 안내
    - 인터넷원서접수 : [www.Q-net.or.kr](http://www.Q-net.or.kr)    • 홈페이지 : [www.hrdkorea.or.kr](http://www.hrdkorea.or.kr)



## I. 검정시행일정 및 종목

### 1. 검정시행일정

등급	회별	필기시험 원서접수	필기 시험	필기시험 합격 (예정)자 발표	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방문제출	실기(면접) 시 험	합격자 발 표	
		인 터 넷			실기(면접)시험 원서접수 인 터 넷			
기술사	제93회	1.14 ~ 1.20	2.20	4.1	4.4 ~ 4.7	4.30 ~ 5.12	5.20	
	제94회	4.22 ~ 4.28	5.22	7.1	7.4 ~ 7.7	8.13 ~ 8.25	9.2	
	제95회	7.15 ~ 7.21	8.7	9.30	10.4 ~ 10.7	10.29 ~ 11.10	11.18	
기능장	제49회	3.25 ~ 3.31	4.17	4.29	5.2 ~ 5.4 / 5.6 (5.5제외)	5.28 ~ 6.12	7.1	
기사 (산업기사· 전문사무)	제50회	7.8 ~ 7.14	7.31	8.12	8.16 ~ 8.19	9.24 ~ 10.9	10.28	
	제1회	2.18 ~ 2.24	3.20	4.1	4.4 ~ 4.7	4.30 ~ 5.13	6.10	
	제2회	5.20 ~ 5.26	6.12	6.24	6.27 ~ 6.30	7.23 ~ 8.5	9.2	
	제3회	7.29 ~ 8.4	8.21	9.2	9.5 ~ 9.8	10.15 ~ 10.30	11.25	
	제4회	9.2 ~ 9.8	10.2	10.14	10.17 ~ 10.20	11.12 ~ 11.25	12.23	
기능사	제1회	1.14 ~ 1.20	2.13	2.25	2.28 ~ 3.3	3.26 ~ 4.8	4.29	
	제2회	3.25 ~ 3.31	4.17	4.29	5.2 ~ 5.4 / 5.6 (5.5제외)	5.28 ~ 6.10	7.1	
	제3회	전문계고등학교 필기시험면제자 검정 ※일반인 필기시험 면제자 제외				5.9 ~ 5.12	6.18 ~ 7.1	7.22
	제4회	7.8 ~ 7.14	7.31	8.12	8.16 ~ 8.19	9.24 ~ 10.7	10.28	
	제5회	9.16 ~ 9.22	10.9	10.28	10.31 ~ 11.3	12.3 ~ 12.16	12.30	

#### 【유의 사항】

- 원서접수시간 : 원서접수 첫날 09:00부터 마지막 날 18:00까지임
- 필기시험 합격(예정)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:00임
-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아래 “등급 및 종목별 시행회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
☞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(www.Q-net)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

### ■ 개정 배경

지난, 2006. 6. 28일 고층아파트 전기설비에 대하여 아파트고객이 저압공급을 희망할 경우, 개폐기·변압기 등 한전의 공급설비 설치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 한하여 저압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공급약관이 개정되었으나, 금번에는 산업용, 일반용 등 아파트 이외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도 수용가 고객이 희망할 경우, 전력공급설비의 설치비용을 고객이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압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공급약관 개정

### ■ 개정 시행일자

- 개정일 : 2010. 10. 28
- 시행일 : 2010. 11. 01

### ■ 개정 주요내용

#### • 저압공급범위 확대(제23조)

[현행] 100kW미만까지 저압공급(집합건물은 200kW미만)

[개선] 500kW미만까지 저압공급

#### • 전력공급설비 설치장소 제공관련 개정 건축법 반영(제24조)

[신설]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의 경우 전력공급설비 설치장소를 제공토록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반영

#### • 500kW미만 산업용 저압공급시 계약종별 적용기준 신설(제59조)

[신설] 300kW이상 500kW미만 산업용고객 저압공급시 산업용(갑) 저압요금 적용

#### • 저압 예비전력 공급제도 도입(제63조)

[현행] 고압 이상만 예비전력 공급

[개선] 저압 및 고압 모두 예비전력 공급

※ 전기공급약관의 세부 개정내용 및 전문은 협회 홈페이지([www.keea.or.kr](http://www.keea.or.kr)) 및 한전 홈페이지([www.kepeco.co.kr](http://www.kepeco.co.kr)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■ 협회 대응방안

- 아파트 자가용전기설비는 지난 '06년도에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동 약관이 개정되었지만, 그 이후 아파트 자가용 전기설비중 단일수용가로써 200kW 이상의 저압수용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,
- 산업용 수용가에서 저압으로 전환할 경우, 전기설계·감리·안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, 우리 협회에서도 대책 등을 마련중에 있음